

2024년도 제5회 공무직근로자 [환경관리사_장애인전형] 채용시험 시행 재공고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2024년도 제5회 공무직근로자(환경관리사_장애인전형)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 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전형구분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공무직근로자 (환경관리사)	장애인전형	1명	무기계약	창원지방검찰청(창원시 성산구)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담당 업무
공무직근로자 (환경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사 청소 및 환경 미화각종 행사지원 청소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 작업유리, 마루 광택(왁스) 작업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1)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대검찰청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검찰청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 관리규정, 검찰청 공무원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4 응시 자격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2) 참조
-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환경관리사 정년(만 65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채용예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사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등록한 사람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나.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5.1.6.) 기준]

우대요건	1년 이상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관련분야(청소, 환경미화업무)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 ○ 연차별 차등 배점 		
	준고령자 및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고령자 : 만 50세 이상 ~ 만 55세 미만 ○ 고령자 : 만 55세 이상 		
	저소득층 및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요건	관련법령에의한 기준	증빙서류(예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외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증환자와 그 가족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경력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 단위),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 \times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 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는 필수 제출
 - ※ 폐업기관 경력자도 관련경력이 입증되어야 우대 가능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장에서 경력 검증 절차 있음(면접 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부 제출)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4. 12. 24. (화) ~ ‘25. 1. 6. (월)	‘25. 1. 2. (목) ~ ‘25. 1. 6. (월)	‘25. 1. 14. (화)	‘25. 1. 21. (화)	‘25. 2. 4. (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창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5. 1. 2.(목) ~ 1. 6.(월)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인터넷 및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가능(본관 중앙현관 비치된 접수함 이용)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51456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검찰청
총무과 채용담당 [환경관리사 장애인전형 응시원서 재중] 문의전화 : 055-239-4625

※ 응시번호는 문자메세지로 개별통보(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하며, 1. 8 (수)까지 통보받지 못한 경우 문의(☎055-239-4625)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번호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기본서류 1부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공무직근로자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는 '전형위원 제작·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장애인 증빙서류 1부	장애인 복지카드 복사본 (뒷면포함) 또는 장애인 등록증	
추가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별지서식 제9호>를 사용하여 제출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본한 후 반환해드립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이 무효·취소되고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지방검찰청 총무과(☎ 055-239-4625, 채용 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신고센터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신 분 : 공무원(환경관리사)
- 임용 예정일 : 2025. 2. 초 임용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무기계약(정년까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정년: 환경관리사 만 65세
- 월 보수액 및 복지
 - 매년 법무부 검찰국이 정하는 보수 기준에 따른 근무연차 및 승급에 따라 차등 지급(1년차 약 190만원 상당)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근무시간 : 주5일(40시간), 06:30~15:30(휴게·점심시간 포함)
 - ※ 업무특성상 주 52시간 내에서 휴일 등 근무할 수 있으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등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전형구분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공무직근로자 (환경관리사)	장애인전형	1명	창원지방검찰청(총무과)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청소 및 환경 미화 ○ 각종 행사지원 청소 ○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 작업 ○ 유리, 마루 광택(왁스) 작업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전문성, 계획관리 능력 등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리에 대한 이해 ○ 각종 미화장비 활용법 등 		
응시 자격요건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직(환경관리사) 정년(만 65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등록된 사람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관련분야(청소, 환경미화업무)에서 근무한 경력 ○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만 55세 미만), 고령자(만 55세 이상)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